

## 광명시 공고 제2026-1948호

본 영역은 광명시 **친환경사업본부 수도과(누수방지팀)** 발주사업으로 광명시청 회계과에서 계약을 대행하며, 계약체결 이후의 계약관련 행정업무(착공계 및 공사 관련 서류접수, 대금지급, 실적증명확인 등)는 **친환경사업본부 수도과**에서 처리합니다.

### 시설공사 전자견적 제출안내 공고

#### < 입찰시 유의 사항 >

- **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대상자**에 대하여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49조에 따라 실태조사 하고(조사대상 기간 : 입찰공고일 6개월 전 ~ 조사일, 자본금은 최근 정기 연차결산일 또는 재무상태진단일) 건설업의 등록기준 미달,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, 무등록자 (재)하도급 금지 위반, 직접시공 위반 등 적발된 위법 사항은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, 해당 입찰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.
- 실태조사 업체(개찰 1순위 업체)는 개찰일 익일까지 '실태조사 동의서'를 작성하여 "문서24"(<https://open.gdoc.go.kr>)로 제출하여야 하며(아래 입찰 건설업 실태조사(사전단속)제 시행'을 참조하여 **광명시 도로시설과로 제출**), 동의서에 적시된 위반 사례가 없었는지 확인한 후 날인 및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- 개찰 1순위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개찰 차 순위 업체를 실태조사 하며 계약 후에는 시공 현장 또는 본사를 방문하여 해당 공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.
- **광명시에서 의뢰한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가 건설업 자본금을 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.**
-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「계약이행 특수조건」이 적용되며 **견적 제출 참가자는 「계약이행 특수조건」을 확인한 후에 견적 제출에 참가**하여 주시기 바라며, 개찰 1순위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가 정한 「계약이행 특수조건」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, 「지방계약법」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「지방계약법」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해야 합니다.

#### 1.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

- 공 사 명: 2026년 광명시 요철맨홀 누수복구공사(단가계약)
- 공사위치: 광명시 일원
- 공사내용: 요철맨홀 누수복구 및 관련 민원처리 공사
- 공사기간: 착공일로부터 2026. 12. 25.까지
- 총공사금액: 금80,000,000원(금팔천만원)

(단위: 원)

| 추정금액       | 기초금액       | 추정가격       | 부가가치세     | 관급자재액 |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|-------|
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| 도급자설치 | 관급자설치 |
| 80,000,000 | 80,000,000 | 72,727,273 | 7,272,727 | -     | -     |

## 2. 견적서 제출(투찰) 및 개찰

| 견적서 제출(투찰)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찰일시                | 개찰장소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2026. 9. 3. 18:00부터<br>2026. 9. 9. 10:00까지 | 2026. 9. 9. 11:00까지 | 광명시청 회계과<br>입찰집행관 PC |

○ 본 견적은 지역제한, 총액입찰 대상,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.

※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, 재입찰은 개찰당일 16:00까지 투찰하시고, 17:00시에 개찰합니다.(단,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.)

## 3. 견적제출 참가자격

-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,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**전문공사업 중 상·하수도설비공사업**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까지 그 주된 사무소【법인등기부상 본점(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·인가·면허·등록·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)】가 **광명시 내** 소재업체로 입찰전일까지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, 안내 공고일(낙찰자는 계약체결일)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.
-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 이용약관(입찰자용)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(<http://www.g2b.go.kr>)의 전자 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.
-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**‘조세포탈 등을 한 자’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.**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다만,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**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.**

## 4. 현장설명

-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며 설계도서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.

## 5. 견적제출의 무효

-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9조 및 같은 법

시행규칙 제42조,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등에 의합니다.

## 6.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

- 소액수의계약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.

## 7. 낙찰자 결정

-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$\pm 3\%$ 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,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천한 번호 중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에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-1-나-9)에 따라 **A값(국민연금보험료, 국민건강보험료, 노인장기요양보험료, 산업안전보건관리비, 퇴직공제부금비, 안전관리비, 품질관리비 합산액)을 감액한 금액의 89.745% 이상 투찰한 자 중**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.

**※ 본 공사의 A 값 : 2,753,584원**

- 동일 가격의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추천을 통하여 그 낙찰자를 결정하며,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천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.
- 개찰결과 전산 상 오류 및 기타 본 공사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(입찰순위)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(견적)을 실시합니다.

## 8. 청렴계약 이행 준수

- 본 견적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.

## 9.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

-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.

## 10. 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근절서약서 제출

-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근절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근절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.

## 11. 공사계약 특수조건 시행

- 우리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으니 다음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.
  -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3조에 따라 하도급에 있어서는 전체 하도급 중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또한 차량 및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광명시 등록 차량이나 장비를 우선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.
  - 광명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조례 제6조에 따라 공사에 투입되는 인부의 50퍼센트 이상을 광명 시민 건설노동자로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 - 공사현장 장비 및 자재는 지역 업체를 우선으로 사용하도록 한다.
  - 모든 공사의 사무실은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관내에 위치하도록 한다.

## 12. 입찰 건설업 실태조사(사전단속)제 시행

- 우리 시에서는 시공품질 향상과 건전한 시공문화 조성을 위하여 공사 계약체결 전에 개찰 1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49조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, 그 과정에서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,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, 무등록자(재)하도급 금지 위반, 직접시공 위반 등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, 형사고발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행정조치 부과 및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있으며, 그 외 지방계약법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우리 시 실태조사 이후 적합 판정을 받은 회사는 그 후 6개월간 입찰 건설업 실태조사에서 제외됩니다.
- 실태조사 대상자에 대한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49조 제4항에 따른 **점점 사전 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**하며, 점점 사전 통보 7일 후 실태조사가 실시되므로, 실태조사 대상자는 첨부된 **실태조사 동의서에 적시된 위반 사례가 없었는지 확인하시고**, 위반사례 발견 시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될 수 있음을 인지하신 후 개찰일 익일까지 날인하여 **“문서24” (<https://open.gdoc.go.kr>)을 통하여 광명시 도로시설과로 제출**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외 실태조사 자료는 조사 공무원 방문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 
(문의 : 도로시설과 담당자 ☎02-2680-2924)
- 개찰 1순위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, 개찰 차 순위 업체를 실태조사 하며, 계약 후에는 시공 현장 또는 본사를 방문하여 해당 공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.

### 13.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제출안내

-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.
-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**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(현장별 보증서)**를 **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**하여야 합니다.
- 수급인(하수급인 포함)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.

### 14. 「하도급지킴이」 시스템 의무사용

- 본 공사는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34조 제9항에 따라 ‘전자대금시스템’ 적용 대상 사업이며, 하도급대금, 장비대금, 자재대금, 임금 등의 구분 관리 및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하여 《하도급지킴이(<https://hado.g2b.go.kr>)》를 이용합니다.
- 낙찰을 받은 자는 「하도급지킴이」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. 다만, 하도급자(장비·자재업체 포함)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.
- 최종계약자(하도급업체 포함)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《하도급지킴이》 홈페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하도급 대금, 노무비, 장비·자재대금을 「하도급지킴이」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.
-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, 노무비, 장비·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.
-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'나라장터-하도급지킴이-시스템 사용안내(업체)'를 참고하거나 정부조달콜센터(☎1588-0800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15.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

-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2 「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」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,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「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」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


-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「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.

《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(법 제4조, 제9조) 》

-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·예산·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
-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
- ③ 중앙행정기관·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,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
- ④ 안전·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

## 16.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

-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「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」 제12조(수의 계약체결제한) 사항이 적용됩니다.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‘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’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,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,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. **계약체결 시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**하여야 하며,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.

## 17. 기타사항

-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「계약이행 특수조건」이 적용되며 **입찰 참가자는 「계약이행 특수조건」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**하여 주시기 바라며,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가 정한 「계약이행 특수조건」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, 「지방계약법」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「지방계약법」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해야 합니다.
- 본 공사는 『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』에 따른 **『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』 대상 공사**이며,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『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』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.  
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,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사업 부서 및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- 광명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**체불임금 방지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**
-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,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**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(현장별 보증서)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**하여야 합니다. 수급인(하수급인 포함)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.
-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(E-9)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(H-2) 근로개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(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-296(2019. 1. 8.)호 관련)
- 국민건강보험료, 국민연금보험료, 노인장기요양보험료, 퇴직공제부담금은 『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』(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)에 따르며,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『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』(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-72)에 따라,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에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,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**조정 없이 반영**하여야 합니다. 또한 반영된 보험료, 퇴직공제부담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.

(단위:원)

| 연금보험료   | 건강보험료   | 노인장기<br>요양보험료 | 퇴직공제<br>부금비 | 산업안전<br>보건관리비 | 합계(A값)    |
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356,876 | 270,094 | 11,841        | 172,789     | 1,761,984     | 2,573,584 |

- 입찰자는 입찰유의서,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, 계약일반조건 및 광명시 공사계약특수조건, 설계서,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.
-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용미숙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.
-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(<http://www.g2b.go.kr>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청구 금액(부가세제외)의 1.5%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.
- 본 공사는 광명시 친환경사업본부 발주사업으로 광명시 회계과에서 계약을 체결하나, 계약체결 이후 착공계 등 공사 관련 서류접수, 대금지급, 실적증명 등 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친환경사업본부 수도과에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.

## 18. 보충정보 제공처

- 전자입찰이용안내: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(1588-0800)
-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(<http://www.g2b.go.kr>)
- 광명시 홈페이지([www.gm.go.kr](http://www.gm.go.kr))
- 계약관련 사항 문의처: 광명시 회계과(☎02-2680-2609)
- 공사관련 사항 문의처: 광명시 수도과(☎02-2680-2965)

2026. 9. 3.

광 명 시 분 임 재 무 관



## 실태조사 동의서

|       |  |
|-------|--|
| 회 사 명 |  |
| 주 소   |  |

1. 당사(본인)는 아래 위법 사례와 같은 거짓이나 속임 없이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10조의 건설업 등록기준을 실제로 충족하고 있으며, 광명시장으로부터 낙찰 전 실태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※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10조의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시 행정처분(영업정지6개월) 건설업 담당자(☎02-2680-2924)에게 등록기준 확인 바람

2. 당사(본인)는 아래 불법 행위를 하지 않고 해당 응찰 공사를 시공할 것이며, 계약(착공 또는 완공) 후 광명시장이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.

3. 아래의 사항 위반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가해질 수 있으며, 위반이 적발된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최근 3년 내에 영업정지 처분 사실이 있을 경우 등록말소 처분이 부과됩니다.

※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(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) 제2항에 따라 위촉된 광명시 고문 공인회계사가 당사의 건설업 등록기준 중 실질자본금에 대해 진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### 【 건설산업기본법령 위반 사례 】

- 기술인력의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거나, **기술인력이 상시 근무\*(아닐 시 영업정지)** 하지 않는 경우  
\* 타 법인 임직원(이사감사 등) 또는 개인사업 겸임, 단시간 근무(8시간근무 미만) 또는 재택 근무 등 비상근자, 최저 임금 이하 임금 수령자, 거래처 근무자(건설기계임대사업자, 무등록 건설사업자 등), 자격증경력증 소유 지인을 채용한 후 비상근
- 건축법 등 법령을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구획하거나 확보한 경우  
(예- 무단증축·용도변경, 사무실 미운영, 다른 회사와 공유(통로·출입문 등) 및 연결)
- 다른 시·도에서 실질적 본사를 운영하면서(지사 등의 형식) 광명시에 형식적인 본사 사무실을 두거나, 등록된 본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건설업 영위
- 단기 차입, 미인가 금융상품, 허위 세금계산서 등 **허위자료로 자본금 총축**
- 건설업 등록증 등 대여를 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불법하도급을 주는 행위  
(모작계약, 하도급업체 직원 실행소장, 무등록 건설사업자 재하도급)
- 직접시공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획된 직접시공계획서 불이행, 위법한 현장기술자 중복 배치(한 기술자가 여러 현장에 중복 근무) 또는 근무시키지 않는 행위 등

202 . . .

대표자 성명 : (인)

광명시장 귀하



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

[별지 제10호서식]

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

• 해당하는 [ ]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(1쪽)

|     |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|
|-----|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--|
| 발주자 | 발주기관    | 발주부서 | 발주날짜                   |  |  |  |
|     | 발주내용    |      | [    ] 공사    [    ] 용역 |  |  |  |
|     |         |      | [    ] 물품    [    ] 기타 |  |  |  |
|     | 수의계약 사유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|

|                |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|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계약상대자<br>(확인인) | 성명  | 소속 | [ ] 개인 [ ] 법인<br>[ ] 단체 [ ] 기타 |
|                | 연락처 | 주소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

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① |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, 배우자,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·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·비속에 해당하는가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[ ] 예 [ ] 아니오<br>[ ] 해당없음 |
| ② | 계약 업무를 법령상·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, 배우자, 공직자의 직계존속·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·비속에 해당하는가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[ ] 예 [ ] 아니오<br>[ ] 해당없음 |
| ③ | 발주기관(산하기관)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, 배우자,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·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·비속에 해당하는가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[ ] 예 [ ] 아니오<br>[ ] 해당없음 |
| ④ | 발주기관(자회사)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, 배우자,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·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·비속에 해당하는가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[ ] 예 [ ] 아니오<br>[ ] 해당없음 |
| ⑤ |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, 배우자, 국회의원의 직계존속·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·비속에 해당하는가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[ ] 예 [ ] 아니오<br>[ ] 해당없음 |
| ⑥ |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, 배우자, 의원의 직계존속·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·비속에 해당하는가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[ ] 예 [ ] 아니오<br>[ ] 해당없음 |
| ⑦ |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[ ] 예 [ ] 아니오<br>[ ] 해당없음 |
| ⑧ |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(공직자, 배우자, 공직자의 직계존속·비속,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·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,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,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)에 해당하는가? | [ ] 예 [ ] 아니오<br>[ ] 해당없음 |

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.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년 월 일

광명시 (분임)재무관 귀하

계약상대자(확인인)

(서명 또는 인)